

의안번호	2218377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6.05.14.
추계번호	26E2205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과표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의
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3년 간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570억원, 2030년 162억원 등 2027~2030년 4년 간 총 2,111억원(연평균 5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,577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534억원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(안 제42조제1항제1호나목)	-570	-717	-662	-162	-2,111	-528
- 국세(74.7%)	-426	-535	-494	-121	-1,577	-394
- 지방소비세(25.3%)	-144	-181	-167	-41	-534	-13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비고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) 제1항 표 제1호나목	○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경영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3년 연장			—
		<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 일반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>			
			~2026.12.31.	2027.1.1.~2029.12.31.	
		현행	9/109	8/108	
		개정안	9/109	9/109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) 제1항 표 제1호나목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‘공제대상금액 × 공제율’로 산출하고,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공제율 변화를 반영한 의제매입세액 금액의 차이로 추계
 -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 일반사업자가 신고한 공제대상금액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정
 - 공제대상금액 = $\min(\text{①}, \text{②})$ ¹⁾
 - 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
 - ②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× 한도율²⁾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, 연간 공제 신고자료는 1기 및 2기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
 - 공제대상금액의 최근 추세가 추계기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더라도 공제대상금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
- 부가가치세 징수 시점을 고려해 세수효과를 조정하되, 매년 징수 기간별로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1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5호서식]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

2) 의제매입세액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, 업종별·규모별로 30~50%(2027년 12월 31일까지는 50~75%)의 한도율을 적용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공제대상금액 실적)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고한 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은 2021년 14.4조원에서 2024년 11.4조원으로 연평균 7.7% 감소하는 추세

[표 2] 음식점 경영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신고실적(귀속 기준)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공제대상금액	144,405	140,244	138,342	113,685	-7.7

주: 1. 공제대상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(‘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’)의 신고내역을 집계한 것으로, 확정신고 및 결정·경정 전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
 2. 연간 금액은 1기 및 2기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
 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변화) 개정안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시 공제액은 2027년 귀속 기준 7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 - (공제대상금액) 최근(2022~2024년) 연평균 증감률 추세 유지를 전제

[표 3] 음식점 경영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추정(귀속 기준)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공제대상금액	104,972	96,928	89,500	82,641	76,308

- (의제매입세액 공제율) 현행 공제율(8/108) 및 개정안의 공제율(9/109) 반영
- (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변화) 2027년 귀속 기준으로 개정안 적용에 따른 공제액은 현행 공제액 대비 7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
 - 2027년 공제액: (현행) 6,630억원, (개정안) 7,390억원

[표 4] 음식점 경영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추정(귀속 기준):
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의제매입세액(현행 공제율, A)	6,630	6,122	5,652
의제매입세액(개정안 공제율, B)	7,390	6,824	6,301
의제매입세액 변화(B-A)	760	702	648

□ (추계 결과)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570억원 등 2027~2030년 4년 간 총 2,111억원(연평균 5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부가가치세의 징수 시점을 고려해 연도별 세수효과를 조정함
 - －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연도별 세수효과를 산출
- 2027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,577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534억원 감소

[표 5] 음식점 경영 과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연장 시 세수효과(징수 기준):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570	-717	-662	-162	-2,111	-528
－ 국세(74.7%)	-426	-535	-494	-121	-1,577	-394
－ 지방소비세(25.3%)	-144	-181	-167	-41	-534	-133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